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확대〉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08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병덕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29.
3. 회부연월일 : 2025.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신제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을 받은 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그런데 시행령에서 의무대상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신제품의 판로 확대 및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의무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범위처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생략)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 ----- ----- ----- -----, ----- ----- -----.

현행법 제17조¹⁾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22조²⁾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 그 품목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8조의5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 및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현행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개정안과 같이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기관을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이 현재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422개에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외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총 846개로 대폭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개정안에 따른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변경 비교표

구 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대 상 기 관	국가기관	48	48
	지방 자치 단체	광역시도	17
		기초자치단체	226
	교육자치단체		17
	공공 기관	공기업	31
		준정부기관	57
		기타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 14개 산업부 고시 기관 : 12개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243
	지방공기업		166
	지방의료원		35
	특별법인		6
합 계		422	846

이와 같이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이 확대되는 경우 2022년 2,845억에서 2023년 3,487억원, 2024년 3,892억원으로 최근 3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증신제품 구매 실적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초기 인증신제품 판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을 수 있는 인증신제품 개발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기술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인증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3] 최근 3년간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계
2022	21,306	88,675	174,563	284,544
2023	41,205	88,068	219,517	348,790
2024	52,514	106,780	229,911	389,205

문 의 처

02)6788-5457